#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99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2020년 10월 16일

○ 회 부 일 : 2020년 10월 26일

# 2. 제안이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정치검정 및 주행검정으로 세분하여 시행) 수수료를 시·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택시 1대당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별표의 수수료 징수대상사무로 규정 (안 별표 제2호의 자목 신설).
  -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1대 2.400원
  -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 2,800원, 거리검정료 1km당 600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2)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서울협치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별도첨부)

| 개선권고 의견                 | 검토 결과 (미반영)         |
|-------------------------|---------------------|
| - 제4조2의 조문을 신설하여 이미 납부한 | - 조문 신설 내용은 수수료 발급. |
|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 처리되기 전만 반환이 가능하고    |
| 그 신청을 취소할 경우 반환할 수 있도   | 발급이후 가능할 수 있는 수수료   |
| 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반환을 불가능하게 하여 미반영    |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5)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없음.
- 6)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7. 9.~7. 29.) 결과: 의견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 및 배경

○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각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 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개정으로 택시미터 수리검정(정치검정과 주행검정으로 세분하여 시행) 수수료를 시·도지사 등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으로 징수하게 됨에 따라 서울시 택시미터 수리 검정 수수료 징수 금액을 본 조례 별표에 신규로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의 자목 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
|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사       | 【별표】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  | '액(제3     | 조 관련)         |
| 무 및 금액(제3조 관련)       | 1. (현행과 같음)  |           |               |
| 1. (생 략)             | 2. 분야별 수수료   |           |               |
| 2. 분야별 수수료           | 가. ~ 아. (현행과 같음)   |           |               |
| 가. ~ 아. (생 략)        | 자.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  | 료: 「フ     | <u> 자동차관</u>  |
| <u>&lt; 신 설 &gt;</u> | 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  | 59호서      | <u> 식,「자</u>  |
|                      | 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여  | Ⅱ 관형      | <u>한 규정</u>   |
|                      | 제25조제3항 및 별지 제   | 6호서/      | 식·제7호         |
|                      | <u>서식</u>  |           |               |
|                      | 수수료 장수대상시무   | <u>단위</u> | 금 액           |
|                      | <u>1</u> ) 택시마터 정치검정 수수료   | <u>1대</u> | <u>2,400원</u> |
|                      |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기본검정료와 가리검정료의                                  | 합계 금액의    | 로 장수한다.       |
|                      | - 기본검정료(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br>봉인 등)                          | <u>1대</u> | <u>2,800원</u> |
|                      | - 거리검정료(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br>※ 단, 1km미만은 1km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 <u>1대</u> | <u>600원</u>   |
|                      |  |           |               |

- ※ 수리검정(정치·주행검정)1): 택시미터기 고장수리, 정착, 검정봉인 파손 시 정치·주행검정
- 정치검정 : 정치검정기로 택시미터기 프로그램을 시간·거리·할증이 허용오차(0~+ 2%)이내인지 검정하고, 택시미터기 외관도 검정함.
- 주행검정 : 주행검정기 로울러에서 실제 주행한 거리와 택시미터기에 표시거리를 비교 하여 허용오차 $(0\sim +4\%)$  이내인지 여부를 검정함.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56조 및 별표 30

| 개정 전                           |                |          | 개정 후                     |    |  |
|--------------------------------|----------------|----------|--------------------------|----|--|
| 제156조(수수료액) ①법 제76조에 따라 신청인이 旨 | <b>날부하여야</b> 힐 | <u>}</u> | 제156조(수수료액) 변경내용 없음      |    |  |
| 수수료는 제12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     | 30과 같다.        |          |                          |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0]    |    |  |
| <u>수수료</u> (제156조제1항 관련)       |                |          | <개정 2019. 12. 9.>        |    |  |
| 납 부 자                          | 금 액            |          | <u>수수료</u> (제156조제1항 관련) | )  |  |
| 12. 법 제47조에 따라 택시미터의 검정(제      | 1 대 에          |          | 납부자                      | 금액 |  |
| 9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만 해          | 대 하 여          |          | 12. 삭제<2019. 12. 9.>     |    |  |
| 당한다)을 신청하는 자                   | 3천원            |          |                          |    |  |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29조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1항에 따 | 제29조(검정 수수료) 검정기관은 규칙 제95조제 |
| 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5조제  | 1항에 따라 검정종류별로 수수료를 받아야 한    |
| 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 다. 다만,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 |
|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수료를 받    | 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 실시할 때에는     |
| 을 수 있다.                          | 정치검사 수수료와 주행검사 수수료를 구분하     |
| 1. 정치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1        | 여 받을 수 있다.                  |
| 2. 주행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2        |                             |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u>검정의 신청</u> 등) ① 택시미터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59호서식의 택시미터(제작、수리、사용)검정신청서를 <u>시、도지사</u> 또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u>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라</u> 한다)에 제출하고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사용검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신청서 대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다.
  - 1. 제작검정 : 택시미터를 제작 또는 수입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하는 검정
    -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봉인이 파손되어 이를 수라하거나 검정봉인을 파손하고 수라하는 행위
    -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 3. 사용검정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정
    - 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u>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u>.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 나에 제2호에 따른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따른 차령연장을 위한 검사 시 실시하는 검정. 이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수리 검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관련 법규 개정 내용 〉

| 관 련 규 정             |            | 당 초             | 개 정         |
|---------------------|------------|-----------------|-------------|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30] 12 | 3,000원          | 삭제 (자율화)    |
| 제156조 ('19.12.9 개정) | [별지 제59호]  | 3,000원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                     | 1. 정치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1 | 삭 제         |
|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 | 2. 주행검사    | 수리검정 수수료의 3분의 2 | 삭 제         |
| 정 ('20.2.21 개정)     | [별지 제 6호]  | 정치검사 1,000원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                     | [별지 제 7호]  | 주행검사 2,000원     | 검정기관이 정한 금액 |

- ※ 개정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76조에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받 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리검정 수수료에 대해서 만 3,000원으로 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검정기관에서 정한 수 수료를 받도록 자율화하고자 함.
-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은 「자동차관리법」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서울 특별시 품질시험소"에서 시행규칙 및 규정에 따라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를 1995년부터 정치검사(1천원), 주행검사(2천원)로 구분하여 정액제로 징수해왔음.

#### ○「자동차관리법」

- 제47조(택시미터의 검정 등) ① 택시요금미터(이하 "택시미터"라 한다)를 제작、수리、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택시미터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7. 제47조에 따른 택시미터검정대행업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

6.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 제3조(위임사무)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

□ 도시교통실

| 주관부서  |     | 사     | 무   | 명     |   | 근거법령   | 수임기관   |
|-------|-----|-------|-----|-------|---|--|--------|
| 택시물류과 | 18. | 택시미터의 | 수리: | 검정의 실 | 4 | > 「자동차관리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제2호<br>(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6호) | 품질시험소장 |

#### 〈 서울특별시 품질사업소 〉

#### □ 연 혁

○ '77. 1. 1. : 「서울특별시 계량기검정사업소」 발족 (조례 제1118호)

○ '81. 12. 1. :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 「계량기검사과」로 개편 운영

○ '83. 12. 31. : 서울특별시 공업시험소로 분리 발족 (조례 제1837호)

○ '99. 3. 15. :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계량기검정과」로 개편 운영

※ 시 구조조정에 의거 건설자재시험소와 공업시험소 기구 통합

#### □ 주요 시설 현황

#### ○ 별관 시설

- **위 치**: 서초구 태봉로 108 (우면동 141번지)

- **부 지**: 5.971 m²

- **건 물**: 4개동, 1.423 m² (본관동·주행검정장·접수실·창고 등 )

※ 수도미터 검정시설: 양재AI R&D 핵심지구 조성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19. 11. 15.)

#### ○ 택시미터 주행검정 시설

- **주행검정 기기**: 총 16개 라인

r A동: 10개 라인 └ B동: 6개 라인

- **일일 검정능력**: 약 1,000대 (시설용량 기준)

####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장비 현황

- **택시미터**, **저울**, **수도미터 등** : 총 16종 92점

택시미터 : 47점
저울, 수도미터 : 34점
기타(가스미터, L.P.G 등) : 11점

○ 재무국은 수리검정수수료 금액을 검정기관에서 정하도록 자동차관리 관련 규칙 및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징수사항 규정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나.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신설(안 제3조 별표의 2 - 자 신설)

- 안 별표 개정안은 정치검정 수수료를 현행 1천원에서 2천4백원으로, 주행검정수수료는 현행 2천원에서 기본검정료 2천8백원과 거리검정료(매 1km 초과시 마다) 6백원으로 하려는 것임.
  - · 정치검정 수수료: 1.000원 → 2.400원
  - · 주행검정 수수료: 2,000원
    - → 기본검정료 2.800원 + 거리검정료 600원(1km 초과 시 마다)
- 수수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과 재정경제부 고시(제 2007-39호(2007. 8. 13.))에 따라 용역차종별 검정거리·소요시간 등과 인건비·노무비·경비 등을 감안하여 수수료 산정 연구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및 관계기관 적정성 협의를 거쳐 산정하였음.

## 〈추진 경위〉

- 수수료 산정용역 시행 (<sup>2</sup>0.3.10.~5.18.)
  - 용역개요 : 기간(20.3.10.~5.11.), 용역비(2.750.000원), 용역사((사)한국응용통계연구원)
  - 산정근거 :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③항 및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39호(2007. 8. 13.)
  - 산정방법 : 차종별 검정거리·소요 시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산정
- **수수료 산정안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20.5.18.~22.)
  - 대상기관
    - · [서울특별시 주관부서] 택시물류과, 보건의료정책과(구급차)
    - · [운송기관]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시설관리공단(장아인택시)
    - · [검사기관 / 수리업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수리업체(63업체)
  - 조회결과 (3개 조합만 회신)
    -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현행대로 동결
      - 인상액이 과도(정치검사 인상률 2.4배, 주행검사 인상률 2배)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택

시업계의 극한 상황이므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현행대로 동결

최근 코로나 19로 승객이 줄어 택시업계의 매출감소로 어려운 점 고려하여 동결바람

·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서울시 인상안의 4배 이상 인상

'95년부터 25년 동안 2천원인 주행검정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동 기간동안 최 저임금은 634%, 택시요금은 284% 인상되었음)

- **수수료 산정안에 대한 적정성 협의** ('20.5.25.~6.2.)
  - 대상기과 :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3831, '20.6.2): 택시마터 검정수수료는 검정기관이 장하도록 되어 있음
  - · 기획재정부(물)정책와-384, '20.5.25)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협의대상 이님

#### 〈용역결과 및 수수료 결정(안)〉

(단위: 원)

| 수수료 징수대상사무                            | 단위 | 결정액(안)<br>(백원단위 절사) | 산정액<br>(용역결과) |
|---------------------------------------|----|---------------------|---------------|
| 1) 택시미터 정치검정 수수료                      | 대  | 2,400               | 2,484         |
| 2) 택시미터 주행검정 수수료 : 기본검정료와 거리검정료의 합계   | 금액 | 으로 징수한다.            | •             |
| - 기본검정료 (접수, 차량유도, 신청서 확인 및 안내, 봉인 등) | 대  | 2,800               | 2,869         |
| - 거리검정료 (주행 검정거리가 매 1km초과 시 마다)       | 대  | 600                 | 620           |
| % 단, $1km$ 미만은 $1km$ 초과 거리검정료를 징수한다.  | 41 |                     | 020           |

※ 검정수수료 산정기준 : 정치검정(4분/대), 주행검정(기본료 4분50초/대, 검정료 1분05초/km)

# - 결정안(차종별)

(단위 : 원/대)

|         |               | 정치검정  |       | 주     | 행검정   | 수수료    |        |       |
|---------|---------------|-------|-------|-------|-------|--------|--------|-------|
| 차종      | 관련단체          | 수수료   |       | 기본    | 거리    |        |        |       |
| 사공      | - 단단단제<br>-   |       |       | 검정료   | 검정료   | 검      | 정거리(r  | n)    |
|         |               |       |       |       |       |        | 기본거리   | 이후거리  |
| 중형      | ગોળી મોળી     |       | 4,000 |       | 1,200 | 2,132  | 2,000  | 132   |
| 모범, 대형  | 개인·법인<br>택시조합 |       | 4,600 |       | 1,800 | 3,151  | 3,000  | 151   |
| 고급택시    | 4/12-11       | 2,400 | 3,400 | 2,800 | 600   | 71     | 없음     | 71    |
| 장애인택시   | 시설관리공단        |       | 6,400 |       | 3,600 | 6,000  | 5,000  | 1,000 |
| 구급차(민간) | 보건의료정책과       |       | 9,400 |       | 6,600 | 11,000 | 10,000 | 1,000 |

※ 수수료 산출에시 : 중형택시4,000(=2,800+600원/km×2km), 모범택시4,600(=2,800+600원/km×3km)

- 본 개정안은 그간 25년 동안 동결(3천원)된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를 실제 검정에 소요되는 실비를 반영하여 인상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주민에 대한 공적사무를 제공한 보상으로서 부과·징수하는 것이므로 수수료 인상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서울시의 특성에 맞게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관련 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보면 의견조회 결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는 인상액이 과도(정치검사 인상률 2.4배, 주행검사 인상률 2배)하고 코로나19로 승객이 줄어 택시업계의 매출감소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수수료 동결 의견을 제시하는 반면.
-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에서는 1995년부터 25년 동안 2천원인 주행검정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은 가격(동 기간동안 최저임금은 634%, 택시 요금은 284% 인상)으로, 인상안의 4배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재무국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따른 효과로 2021년 택시미터 수리검정 수수료 세입 규모를 금년 세입 전망액(2,940만원) 대비 약 99.5% 증가한 5천 8백만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음.

## 〈 연도별 택시미터 수리검정수수료 징수실적 〉

(단위: 천원)

| 구 분    | 2017   | 2018   | 2019    | 2020<br>(전망) | 2021<br>(요구액) |
|--------|--------|--------|---------|--------------|---------------|
| 수수료 수입 | 31,298 | 28,780 | 154,254 | 29,400       | 58,640        |

<sup>※ &#</sup>x27;19년도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일제검정 실시로 한시적으로 징수액이 대폭 증가되었음.

## 다. 부칙(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본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법규 일반원칙에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비록 소액이지만 수수료를 증액시키는 사안으로 시행일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수리검정의 주기는 따로 없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95조 ①항 2호의 행위를 했을 경우 수리검정을 하고 있음.
  - 2. 수리검정 : 택시미터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실시 하는 검정

## 가. 자동차에 택시미터를 부착하는 행위

- 나. 제9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장치를 개조하는 행위
- 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u>검정봉인</u>이 파손되어 이를 수라하거나 검정봉인을 <u>파손</u>하고 수리 하는 행위
- 라. 요금장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행위
- 마.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리행위
- 보통 택시들의 수리검정 주기를 말한다고 하면 위의 가. 목의 행위로 대폐차를 하면서 택시미터를 다른 차량으로 옮겨 부착할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일반(중형)택시의 경우 대폐차 8년에 1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1항, 별표2)

|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